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,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관계기관 등,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조사·연구, 복지·교육·문화지원, 상담 및 자립지원,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,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2월

발의자: 이순우·000(0인)

1. 제안이유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,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관계기관 등,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·교육·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법령 등과의 관계)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

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업 추진 등)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
2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·교육·문화지원 사업
3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
4.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
5.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2.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관계 기관 등)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교,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·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